

2020년 2월 1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역정책과 과 장 최명철(044-201-2511), 사무관 박경일(2519) / 제공일: 2월 7일(총 4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개정으로 가축 방역과 농가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올해 2월 4일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 개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와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해 가축 방역 관리 체계 강화
 -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, 도태명령 제도 도입, 지자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정례화 등 방역체계 강화
 - 사육제한,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농가의 폐업 지원 근거 마련과 도태명령에 따른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 농가 지원 강화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“농식품부”)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되었고,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□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(제3조의4제4항 개정)
 -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 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·전실 등 강화된 방역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의무기한을 단축

- (현행) 강화된 방역시설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갖추면 됨 ⇒ (개정)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하여 갖추어야 함
- (폐업 농가 지원)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'폐업 등'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48조제1항제1호 개정)
- (긴급조치)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 가능(제52조 개정)

②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(제13조)

- 국립가축방역기관장, 시·도지사 및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,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·훈련을 실시하도록 함
- (현행)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
- (개정) 국립가축방역기관장, 시·도지사 및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, 수의사,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운영

③ 지방자치단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강화(제17조)

-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 부여
- ① (점검결과 조치) 농가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
 - *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한 결과 정비·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
- ② (정비보수 명령) 지방자치단체장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·보수 명령
 - *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

- ④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시 가축과 직접 접촉 등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 근거 마련(제20조 개정)
- (현행) 가축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예방적 살처분 가능
 - (개정) 특정매개체(야생 멧돼지, 야생 조류)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가능(가축과 직접 접촉 또는 접촉 의심 경우 등에 한정)
- ⑤ 도태 명령 제도 이행시 생계안정자금 지원
-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 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새로이 부여(제21조제3항 개정)
 - 도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 지원(제49조제1항 개정)
 - * 장관도 현행 제52조에 따라 시·군·구청장에게 도태 명령 긴급 조치 가능
- ⑥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 지원(제48조의2 신설)
-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“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”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가축”이란 소, 말, 당나귀, 노새, 면양·염소(유산양을 포함한다), 사슴, 돼지, 닭, 오리, 칠면조, 거위, 개, 토끼,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</p> <p>2. “가축전염병”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,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.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제2종 가축전염병: 탄저(炭疽), 기종저(氣腫疽), 브루셀라병, 결핵병(結核病), 요네병, 소해면상뇌증(海綿狀腦症), 큐열, 돼지오제스키병, 돼지일본뇌염, 돼지테센병, 스크래피(양해면상뇌증), 비저(鼻疽), 말전염성빈혈, 말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[유산양(乳山羊: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)-----]</p> <p>-----.</p> <p>2. ----- -----.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바이러스성동맥염(動脈炎), 구역(溝疫), 말전염성자궁염(傳染性子宮炎), 동부말뇌염(腦炎), 서부말뇌염, 베네수엘라말뇌염, 추백리(癩白痢), 가금(家禽)티푸스, 가금콜레라, 광견병(狂犬病), 사슴만성소모성질병(慢性消耗性疾病)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</p> <p>다. (생 략)</p> <p>3. ~ 6. (생 략)</p> <p>7. “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”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</u> 말한다.</p> <p>8. (생 략)</p> <p>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癩白痢: 병아리</u>----- <u>흰설사병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-----<u>야생</u> <u>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</u> <u>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</u>----- -----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에게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·의류·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·검사·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<u>사람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⑤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<u>자</u>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등 가축전염병을 옮길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신체·의류·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질문·검사·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 -----<u>사람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<u>자</u>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<u>경유하여</u> 입국하는 경우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입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, 신체·의류·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</p>	<p>⑥ ----- -----<u>사람은</u>----- ----- <u>거쳐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·검사·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,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1.·2. (생 략)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수의사, 가축인공수정사 중 수의·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<u>자로서</u>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<u>자</u></p>	<p>3. ----- ----- --<u>사람으로서</u>----- -----<u>사람</u></p>
<p>3의2. (생 략)</p>	<p>3의2. (현행과 같음)</p>
<p>4.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<u>자</u></p>	<p>4. ----- ----<u>사람</u></p>
<p>5. 가축분뇨를 수집·운반하는 <u>자</u></p>	<p>5. ----- -<u>사람</u></p>
<p>6. (생 략)</p>	<p>6. (현행과 같음)</p>
<p>7.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5호의 원유를 수집·운반하는 <u>자</u></p>	<p>7. ----- ----- -----<u>사람</u></p>
<p>7의2. (생 략)</p>	<p>7의2. (현행과 같음)</p>
<p>8.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·검사·소독 등 조치</p>	<p>8.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가 필요한 <u>자로서</u>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<u>자</u></p> <p>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·검사·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<u>자</u>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⑧ (생략)</p> <p>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, 방역·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<u>자에게</u>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<u>자</u>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⑩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·교육·소독, 입국하는 <u>자</u>에 대한 고지의 방법, 질문·검사·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에 따르거나 입</p>	<p>---<u>사람으로서</u>-----</p> <p>-----<u>사람</u>-----</p> <p>⑦ -----</p> <p>-----<u>사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-----</p> <p>-----<u>사람에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사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⑩ -----</p> <p>-----<u>사람에</u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학조사관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가축방역기관장, 시·도지사 및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</u> <u>2.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</u> <u>3. 그 밖에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등 전염병 또는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</u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⑤ 국립가축방역기관장, 시·도지사 및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역학조사관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·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<u>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역학조사관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⑥ -----, <u>시·도지사 및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-----, <u>시·도지사 및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⑧ <u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·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과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·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17조의3(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</p>	<p><u>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,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7조의3(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) ①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21조(도태의 권고) ①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 대상 가축의 범위, 기준,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22조(사체의 처분제한) ① 제11</p>	<p><u>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1조(도태의 권고 및 명령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우역, 우폐역, 구제역, 돼지열병,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-----<u>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2조(사체의 처분제한) ①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가축방역관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 또는 소유자등이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항의 물건을 직접 소각·<u>매몰</u> 또는 소독할 수 있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매몰</u>. <u>화학적 처리</u> 또는----- -.</p>
<p>제24조의2(주변 환경조사 등) 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장관은 <u>긴급을</u> 요하는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·④ (생 략)</p>	<p>제24조의2(주변 환경조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긴급한</u>----- -----.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2조(수입금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.</p> <p>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</p>	<p>제32조(수입금지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을 <u>경유한</u> 지정검역물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항공기·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·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<u>경유한</u> 지정검역물</p> <p>3. (생략)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 <p>제33조(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) ①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<u>화주(貨主, 대리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반송(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명할 수 있으며,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,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(이하 “소각·매</u></p>	<p>---거친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거친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화물주-대</u></p> <p><u>리인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반송, 소각·매몰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4조(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) ① (생략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<u>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</u>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 내용, 위생 상황 및 검역시설의 등록·관리 절차 등을 규정한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/p>	<p>제34조(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<u>가축방역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8조(화물 목록의 제출) ①·② (생략) ③ 검역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하역을 금지하고, <u>화주에게</u>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·매몰등을 명할</p>	<p>제38조(화물 목록의 제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<u>화물주에게</u>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42조(검역시행장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를 근무하게 하거나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 수 있다. 다만, 수입 원피(原皮) 가공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역시행장에는 검역관리인을 두게 할 수 있다.</p> <p>⑤ ~ ⑨ (생략)</p> <p>제43조(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검역시행장의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<u>화주</u>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금액은 동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⑥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<u>검역상</u>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의 <u>화주나</u> 운송업자에게</p>	<p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검역시행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: <u>가공 전의 가죽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⑤ ~ 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3조(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-----<u>화물주</u> <u>로부터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-----<u>검역을 위하여</u>----- -----<u>화물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48조(보상금 등) ①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1.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<u>손실</u>을 입은 자</p> <p>2.·3. (생 략)</p> <p>4.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<u>매몰한</u> 물건의 소유자</p> <p>5.·6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.</p> <p>1. 제5조제3항·제6항, 제6조의2,</p>	<p>-----</p> <p>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8조(보상금 등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u>폐업 등 손실</u>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u>화학적 처리 또는 매몰한</u>-----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, 제13 조제3항, 제17조제1항·제2항, 제17조의3제1항·제2항·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</p> <p>2. ~ 5. (생 략)</p> <p>④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----- -----제13 <u>조제6항</u>----- ----- ----- 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1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 가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 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⑥ <u>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 하여야 하는 자가 보상금을 반환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「지방세 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률」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한다.</u></p> <p>⑦ <u>제5항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제48조의2(폐업 등의 지원)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중점방역관 리지구로 지정되기 전부터 「축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산법」 제2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축산업을 영위하던 자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「축산법」 제22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가축의 종류, 지급기준, 산출방법,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48조의3(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 등) 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협의회는 가축전염병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요구가 있으면 지</p>

현 행	개 정 안
<p>공립 병원, 보건소 또는 민간의 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 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전담의 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 사 체를 소각하거나 <u>매몰한</u> 가축 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,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, 가축방 역관,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 무원</p> <p>4. (생 략)</p> <p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 축의 살처분 및 소각·<u>매몰을 한</u> <u>날부터 15일 이내에</u> 제1항 각 호 의 <u>사람에게</u> 심리적 안정과 정신 적 회복을 위한 <u>치료지원의 내</u> <u>용, 신청의 절차 및 방법, 신청기</u> <u>간,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</u> <u>관한 사항을 알려야</u>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u>화학적</u> 처리 <u>또는 매몰한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매몰·화학</u> <u>적 처리(이하 “살처분등”이라 한</u> <u>다)를 하기 전에</u>----- <u>사람 중 살처분등에 참여하는 자</u> <u>에게 살처분등의 작업환경, 스트</u> <u>레스 관리 및</u>----- -----<u>치료지원에</u>----- -----<u>설명하여야</u>-----.</p> <p>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 축의 살처분등을 시행한 날부터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제1항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제3항에 따른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,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.</p>	<p><u>9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람 (다만, 심리검사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)에게 가족의 살처분등 후 심리적·정신적 변화 및 증상에 관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, 심리상담 또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심리상담 또는 치료를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하 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에 치료를 요청하여야 하며, 요청을 받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를 하여야 한다.</p> <p><삭 제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⑤ (생 략)</p> <p>⑥ 전담의료기관의 <u>지정, 치료</u> 신청의 절차 및 방법, 치료 요청의 절차 및 방법, 비용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·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5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<u>제13조, 제15조 제1항 및 제3항, 제17조, 제17조의3, 제19조, 제20조, 제22조제2항 및 제3항, 제23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라</u> 투약, 소독, 역학조사, 이동제한, 살처분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소각·매몰하는 데 드는 비용 및 주민 교육·홍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<u>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u>지정, 심리 검사, 치료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5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-----</p> <p>-----<u>제3조의4, 제13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제21조제2항, 제22조제2항</u>-----</p> <p>-----, <u>제24조, 제24조의2 또는 제25조제2항, 제48조의2에</u>-----<u>강화된 방역시설의 구비, 투약</u>-----</p> <p>-----, <u>도태</u> 등을-----</p> <p>-----<u>물건의</u>-----<u>화학적 처리·매몰, 매몰지의 관리,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,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</u>-----</p> <p><u>등에</u>-----<u>비용,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비용 및 폐업지원에 드는 비용의</u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5의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6. ~ 9. (생략)</p>	<p>제57조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의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3.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</u></p> <p>6. ~ 9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제13조제3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58조(벌칙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제13조제6항</u>-----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<u>방역시설을</u> 갖추지 아니한 자</p> <p>1의2. ~ 3의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0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<u>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방역시설을</u>----- -----</p> <p>1의2. ~ 3의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3의4.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3의4. · 3의5.</u> (생략)</p> <p><u>3의6.</u>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<u>통지하지</u> 아니한 축산계열화사업자</p> <p><u>3의7.</u> (생략)</p> <p>4. · 5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5의2. ~ 5의5.</u> (생략)</p> <p><u>5의6.</u>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부</p>	<p><u>역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방역관리 책임자</u></p> <p><u>3의5. · 3의6.</u> (현행 제3호의4 및 제3호의5와 같음)</p> <p><u>3의7.</u> ----- ----- ----- -----<u>거짓으로 통지</u> <u>하거나 통지하지</u>----- -----</p> <p><u>3의8.</u> (현행 제3호의7과 같음)</p> <p>4. ·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2.</u>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<u>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<u>5의3.</u>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<u>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·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<u>5의4. ~ 5의7.</u> (현행 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와 같음)</p> <p><u>5의8.</u> ----- ----- -----<u>붙이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착하지</u> 아닌한 소유자</p> <p>5의7. (생 략)</p> <p>6. (생 략)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~ 10. (생 략)</p> <p>11.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<u>요구에 응하지</u>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</p> <p>12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<u>지</u>-----</p> <p>5의9. (현행 제5호의7과 같음)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-----</p> <p>-----<u>요구를 따르지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